

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삼성SDI 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가 정관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4 호 및 이사회 규정 제 15 조에 근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, 운영 및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2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(이하 ‘위원’이라 한다)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한다. <개정 2026.7.30.>
- ②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들 중에서 선임한다.

제 3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단, 선임된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단,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이를 총원할 경우에 총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5 조 (해임)

- ①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위원의 해임, 사임, 임기만료 또는 기타 그 직을 계속할 수 없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결원된 위원을 선임하여 총원해야 한다.
- ③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 중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해당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, 의무가 있다.

제 3 장 운 영

제 6 조 (개최)

위원회는 매 반기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 (위원회의 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각 위원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이 전 항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당해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모사전송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- 다만,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-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
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9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권 한

제 10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사항
 - 1. 주요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정책
 - 2.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활동
 - 3.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
- ②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사항
 - 1. 주주환원 정책 사전심의
 - 2. 주주권익 관련 주요 사안
- ③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- ④ 위원회 산하 연구회, 협의회 등 조직의 설치, 구성, 운영과 관련된 사항
- ⑤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5 장 기 타 사 항

제 11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-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위원회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사무기구와 간사)

-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사무기구 소속 직원 중에 임명한다.

제 14 조 (경비)

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5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 년 1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2 조 제 1 항 개정 규정은 2026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

서기 2022 년 1 월 27 일 제정

서기 2026 년 7 월 30 일 개정